인터넷 전화 번호 이동 신청 서식 (직접 방문/ 팩스/ 우편 신청 표준서식)

	√ 성명	(서명) ▼ 주민등록번호					
신청인	전화가입자와의 관계	□ 본인 □ 배우자 □ 법인의 대표자(실				 닐무책임자 포함)	
		I				연번	
	√ 변경전 사업자	□ KCT □ KT □ LG U+ □ SK브로드 □ SK텔링크 □ 드림라인 □ 모티스타 □ 삼성네트 □ 세종텔레 □ 일정사업 (스 텔레콤 웍스 콤 콤	변경후 사업자		□ 굿텔레콤	
가입자	√ 성명(법인명)	`	,				
신청정보 작성란	√ 주민(법인)등록번호			√ 사업자등록번호			
		전화번호가 연속번호인 경우에는 "~"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	√ 번호이동 전화번호	() -		()		-	
		() -		()		-	
		-			(-	
		() -			(-	
		()	-		(-	
	√ 청구정보(뒷4자리)	자동이체계좌		신용카드		합산대표번호	
	√ 연락번호(일반전화/ 법인의 경우실무책임자)			√ 연락번호(휴대폰/ 법인의 경우 실무책임자)			
	연락시간						
	고객구분	□ 개인 □ 법인 번호이동개통희망일					
	현 설치주소						
	이전할 주소						
1. 번호이동성 신청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며,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 내에도 변경 할 수 있습니다. 2. 전화 개통처리일 이후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고객께서 선택하신 사업자의 이용조건과 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. 또한, 요금 납입 청구는 당해 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3. 번호이동성 신청을 위하여 번호이동 관리센터, 시내 및 인터넷 전화사업자 등에게 가입자 정보(성명, 전화번호, 주소 등)을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							
인터넷전화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			
20 년 월 일							
√ 성명(법인명): (인)							
	매개번호 변경후			Dul v O ÷i		$\Box L \rightarrow V$	
유치 사업자 작성란	사업자가 부여한 번호			서비스유형		$\square V \rightarrow V$	
	접수처		접수일		접수방법	직접/ 우편/ 팩스	
	접수자			기타사항			

※ 첨부: 신분증 사본, 번호이동 문의(TEL: 02-557-1124 / FAX: 070-8098-0123)

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따른 고객 안내문

(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해지 안내)

번호이동시 시내전화와 연계되어 판매되던 상품(연관상품)이 있으면 번호이동 관리센터에서 해지 확인전화를 드립니다. 또, 결합상품은 약정기간 만기 전이면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(설비비 반환 및 지로 단독청구 안내)

설비비형 KT 전화인 경우 고객님께 설비비가 반환됩니다.

전화에 합산 과금되던 서비스는 지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(통화권 준수 안내)

이용자는 시내전화 통화권을 준수해야 하며, 통화권 이탈시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.

(수신 시 발신자 요금 안내)

시내전화 가입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 서비스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통화할 경우 번호를 기준으로 통화권에 따른 시·내외 요금이 적용됩니다.

(정전시 통화 재한 및 긴급통신 안내)

인터넷전화는 정전시 통화가 안되며, 이사할 경우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사업자에 신고하셔야 119 서비스가 원할하게 제공됩니다.

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해지, 설비비 반환 및 지로 단독청구, 통화권주수, 수신 시 발신자 요금, 정전시 통화제한 및 긴급통신 관련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.

√ 성명 (서명 또는 날인)



발신자 번호표시(CID) 변경 신청서

⊙ 가입자 정보

가입자명	신청자명	
사업자번호	개인(법정생년월일)	
전화번호	이메일 주소	

⊙ 신청번호 (연번일 경우 '~'으로 표시)

070 전화번호	현재 발신자 번호(CID)	변경할 발신자 번호(CID)

[첨부 서류 : 개인 신분증, 통신사이용증명원, 사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]

- 1. 변경할 전화번호는 가입자 명의의 유선전화[02.031. 및 전국대표번호(1588.1600등 .)] 에 한정됩니다.
- 2. 2015.04.16일 시행 된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에 의하지 않은 발신번호변작은 금지(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2항) 되어 있습니다
- 3. 이를 위반시에는 발신번호변작을 한 자와 서비스를 제공한자 모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(벌칙) 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발신자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하며, 발신자번호표시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고객명 :

신청인: (서명/인)

㈜굿텔레콤 귀중

Atalkbiz 서식 03-2호